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06 발의연월일: 2020. 10. 6.

발 의 자: 박주민·고민정·김남국

김용민 • 민병덕 • 오기형

오영환 · 이소영 · 이재정

장경태 • 전용기 • 천준호

최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,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를 통한 '포용적 성장'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. 이에 대한 사 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,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임.

우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,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,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, 감사에 갈음하

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,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, 이해관계자(stakeholder)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·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·선출권을 도입하며,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,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 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6조의

- 2 신설 및 제542조의6제6항).
- 나.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,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,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,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(안제403조 및 제404조).
- 다.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(안 제5 42조의7).
- 라.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,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·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,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며,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(안 제542조의8).

- 마.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독립성을 확보함(안 제542조의12).
- 바.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(안 제542조의14 신설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4조 중 "第400條와 第403條 乃至 第406條"를 "제400조,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394조제1항 후단 중 "第403條第1項"을 "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第399條·第401條 및 第403條" 를 "제399조·제401조·제403조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403조제3항 중 "있다"를 "있고, 회사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주주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1.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(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
- 2.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괄적 교 환·포괄적 이전, 합병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제40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가 회사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403조 제3항과 제4항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 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0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6조의2(다중대표소송) ①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76조제3항·제4항, 제40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.
 -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 - ④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
제408조의9 중 "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"를 "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"로 한다.

제415조 중 "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"를 "제401조,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 및 제407조"로 한다.

제424조의2제2항 중 "第403條 내지 第406條"를 "제403조부터 제406조

까지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467조의2제4항 중 "第403條 내지 第406條"를 "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542조제2항 중 "第398條 乃至 第408條"를 "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"로 한다.

제542조의6제6항 중 "제403조(제324조"를 "제403조 및 제403조의2(각 제324조"로 한다.

제542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제2항의"를 각각 "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"으로 한다.

-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2 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 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 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.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)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.

제542조의8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 임원·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또는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

8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

제542조의8제4항 후단 중 "구성하여야 한다"를 "구성하여야 하되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본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 (이하 "소액주주"라 한다)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1인 이상의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1인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한다(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선임을 요 구한 사외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

인을 포함시켜야 한다).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, 제542조의6제1항 ·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해당일)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⑦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 서 각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인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542조의12제2항 중 "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"을 "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"을 "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"을 "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"을 "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"로 한다.

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2조의1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)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35조제1항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2분의 1 이상이 되도록"을 "과반수 및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지 않도록"으로, "아니한"을 "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

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"으로 한다.

25의2. 제4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집행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542조의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324條(發起人의 責任免除, 株主 | 第324條(發起人의 責任免除, 株主 의 代表訴訟) 第400條와 第403 의 代表訴訟) 제400조, 제403조 條 乃至 第406條의 規定은 發| 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 起人에 準用한다. 의2----第394條(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第394條(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관한 代表) ① 會社가 理事에 라한 代表) ① ------대하여 또는 理事가 會社에 대 하여 訴를 提起하는 경우에 監 事는 그 訴에 관하여 會社를 代表한다. 會社가 第403條第1項 -----. ----제403조제1항 또 의 請求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 는 제406조의2제1항-----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第401條의2(業務執行指示者 등의 | 第401條의2(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)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 責任) ① ------당하는 者는 그 지시하거나 執 行한 業務에 관하여 第399條· -----제399조 第401條 및 第403條의 적용에 ·제401조·제403조 및 제406조 있어서 이를 理事로 본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第403條(株主의 代表訴訟) ①・② | 第403條(株主의 代表訴訟) ①・②

(생 략)

③ 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訴를 提起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卽時 會社를 爲하여 訴 를 提起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 한 株主의 保有株式이 提訴후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미만 保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도 提訴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.

⑥·⑦ (생략)

第404條(代表訴訟과 訴訟參加, 訴 第404條(代表訴訟과 訴訟參加, 訴

(3	គ	행	과	같	-음)

3	 	 	

-----있고, 회사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주주에게 소를 제 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향이 없다.
- 으로 감소한 경우(發行株式을 1.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 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(발행주 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
 - 2.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 한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 <u>괄적</u> 교환 · 포괄적 이전, 합 병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⑥·⑦ (현행과 같음)

訟告知) ①・②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訟告知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가 회사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4 03조제3항과 제4항의 소가 제 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03 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 주는 위 소송에 참가할 수 있 다.

제406조의2(다중대표소송) ① 모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76조제3항·제4항, 제403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404 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.

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 한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

없다.

제408조의9(준용규정)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, 제382조의4, 제396조, 제397조, 제397조의2, 제398조, 제400조, 제401조의2,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,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.

第415條(準用規定) 제382조제2항, 제382조의4, 제385조, 第386條, 第388條, 第400條, <u>第401條外</u> <u>第403條 乃至 第407條</u>의 規定 은 監事에 準用한다.

- 第424條의2(不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) ①(생략)
 - ② <u>第403條</u> 내지 <u>第406條</u>의 規 定은 第1項의 支給을 請求하는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.

③ (생 략)

第467條의2(利益供與의 금지) ① ~ ③ (생 략)

④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
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
전속한다.
제408조의9(준용규정)
<u>제402</u> 조부터 제406조까지,
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
第415條(準用規定)
제401조,
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
6조의2 및 제407조
第424條의2(不公正한 價額으로
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) ①
(현행과 같음)
② <u>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</u>
<u>및 제406조의2</u>
③ (현행과 같음) (연행과 같음)
第467條의2(利益供與의 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<u>第403條 내지 第406條</u>의 規定은 第3項의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는 訴에 대하여 이를 準 用한다.

第542條(準用規定) ① (생 략)

② 第362條, 第363條의2, 第366條, 第367條, 第373條, 第376條, 第377條, 第382條第2項, 第386條, 第388條 乃至 第394條, 第396條, 第398條 乃至 第408條, 第411條 乃至 第413條, 第414條第3項, 第449條第3項, 第450條와 第466條의 規定은 淸算人에 準用한다.

제542조의6(소수주주권) ① ~ ⑤ (생 략)

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<u>제403조(제324조,</u> 제408조의9, 제415조, 제424조 의2,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

4	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
및	제406조의2
第542個	條(準用規定) ① (현행과 같
음)	
2	
	<u>제398조부터 제406조까</u>
<u>지,</u>	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
<u>조</u>	
제5423	조의6(소수주주권) ① ~ ⑤
(현	행과 같음)
6	
	<u>제403조 및 제403조</u>
	 각 제324조

수 있다.

⑦·⑧ (생 략)

제542조의7(집중투표에 관한 특 | 제542조의7(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)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 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 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(정기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 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 는 그 해의 해당일. 이하 제542 조의8제5항에서 같다)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.

-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

(7) · (8) (현행과 같음)

례)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 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 |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>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 (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 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.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)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하여야 한다.

3	제1	항의	적용	-을	받지	않	<u>-</u> -

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 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 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 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제542조의8(사외이사의 선임) ① (생 략)

-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- 1. ~ 6. (생략)
- 7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
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
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7.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
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
• 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

④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-
제542조의8(사외이사의 선임) ①
(현행과 같음)
②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
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

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계열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(이하이 조에서 "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 였던 자 또는 6년 이상 사외 이사로 재직한 자
- 8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③ (현행과 같음)

소청하되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 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

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 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 항, 제542조의6제1항·제2항의 |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(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

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 는는 수의 주식을 가진 본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(이하 "소액 주주"라 한다) 및 우리사주조 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 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 각 1인 이상의 사외 이사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사외 이사의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 다.

⑥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 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(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 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사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 외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인 을 포함시켜야 한다).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 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, 제542조의6제 당 연도의 해당일)의 6주 전에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<신 설>

제542조의12(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등) ① (생 략)

-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<u>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</u>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.
- ③ 최대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 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

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	할
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	가
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	경
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	일
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	당
일)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	(ه
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	
⑦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	원
회는 사외이사를 선출하는	주
주총회에서 각 사외이사 후	보
자의 추천인을 공표하여야	한
<u>다.</u>	
542조의12(감사위원회의 구	성
등) ① (현행과 같음)	
2	
감사위원	회
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	사
<u>들과 분리하여</u>	
3	

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<u>사외이사가 아</u> <u>닌 감사위원회위원을</u> 선임하거 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 략) <신 설>

감사위원회유	<u> </u>
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시	<u></u>
4	
감사위원회위원이	
<u>사외이사를</u>	
	•
(5)·(6) (현행과 같음)	•
제542조의14(전자적 방법에	의하
의결권 행사) 주주의 수	
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
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	
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	
 주주가 총회에 축석하지	

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

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

第635條(過怠料에 處할 行為) ① 회사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업무 집행사원, 업무집행자, 이사, 집 행임원, 감사, 감사위원회 위원, 외국회사의 대표자, 검사인, 제 298조제3항 · 제299조의2 · 제31 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, 제299조의2·제310조제 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 인, 지배인, 청산인, 명의개서대 리인,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 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 6조제2항·제407조제1항·제41 5조 ·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 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그 행위에 대하여 형(刑)을 과 (科)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 1. ~ 25. (생략)

<신 설>

한다. 第635條(過怠料에 處할 行為) ① 1. ~ 25. (현행과 같음) 25의2. 제415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집행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

26. ~ 32. (생략)

-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 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를 구성하지 <u>아니한</u> 경우

3. ~ 8. (생 략)

④ (생 략)

26. ~ 32. (현행과 같음)
3
· 1. (현행과 같음)
2
과반수 및 우
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
<u> 포함되지 않도록</u>
<u>아니하거나 같은</u>
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
를 위원으로 하여 사외이사
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
_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